

대전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224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22428 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622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김대영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철

변론 종결 2024. 11. 14.

판결 선고 2024. 12. 12.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622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선정자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선정자 C은 원고에게 8,877,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0.부터 2023.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선정자 C은 원고에게 8,877,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C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2018. 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선정자 C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1. 24. 접수 제19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선정자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2. 체결된 증여계약은 8,877,0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877,0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및 선정자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선정자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선정자 C 명의로 2017. 2. 2. 국가보훈처에 합계 8,877,050원을 송금한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선정자 C은 원고에게 2022. 5. 27. 및 2022. 8. 26. 각 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22. 10. 10. 선정자 C에게 위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반환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쟁점

원고는 선정자 C에게 8,877,050원을 대여하여 선정자 C 대신 국가보훈처에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차용 사실을 부인하므로, 원고가 선정자 C에게 8,877,050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 판단

원고가 선정자 C을 대신하여 국가보훈처에 8,877,050원을 송금해 준 것이 아니라면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선정자 C을 대신하여 국가보훈처에 위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갑 제4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22. 10. 10. 선정자 C에게 위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반환을 청구할 당시 선정자 C은 차용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선정자 C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2020. 8. 4.부터

만기발병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원고가 2022. 10. 10. 선정자 C에게 위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반환을 청구할 당시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적어도 당시에는 선정자 C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선정자 C은 원고에게 2022. 5. 27. 및 2022. 8. 26. 각 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차용금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선정자 C을 대신하여 국가보훈처에 8,877,05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선정자 C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선정자 C은 원고에게 차용금 8,877,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2022. 10. 1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민법 제603조 제2항) 2022.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선정자 C에게 송달된 2023.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변제기를 한 달 이내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3. 3.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와 같이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C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2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1. 24. 접수 제19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2018. 1. 22.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선정자 C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22,581,800원이고, 우선변제권 있는 확정일자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합계 70,000,000원,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은 19,998,61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C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96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등 참조).

선정자 C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선정자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선정자 C을 부양할 것으로 부담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선정자 C을 부양할 것을 부담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는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이므로 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것은 아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므로(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선정자 C을 부양할 것을 부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정이나 다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56,000,000원에서 26,000,000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증여 이후 변제로 소멸한 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증여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에 따른 감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물반환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에 공동담보 재산이 그만큼 증가하는 결과로 됨은 사실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근저당권의 확정시까지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이므로, 설령 수익자가 취득 후 그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더라도, 그 대위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감소하여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후 피담보채무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근저당권으로 부담하는 잠재적인 채무는 여전히 채권최고액 전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위변제에 의하여 피담보채무가 종국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수익자에 의한 채무 일부의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더라도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7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증여를 전부 취소하고 원물반환을 명한다. 피고는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주위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선정자 C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윤지숙

판사신일수

판사설승원

별지